

언론과 사회의 변화와 언론중재제도

임 상 원

고려대 신방과 교수

「언론중재」 그리고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0년 제정되었던 언론기본법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1987년 언론기본법은 권위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되어 폐지되었지만 그 가운데 「정정보도청구권」은 중재제도라는 틀 속에서 살아 남았다. 이런 역사적 흔적 때문에 혹은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특정한 이론적 시각에서 중재제도나 정정보도청구권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현상은 지금도 있다. 그러나 중재제도에 대한 그동안의 적대 내지 부정적 태도가 해소되면서 오늘의 언론중재제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좋은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의미있는 제도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평가이다.

이로부터 제기되는 의문은 오늘날 과연 어떻게 하여 중재제도가 안정적으로 수용되게 되었는가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은 중재제도를 어떻게 해석 규정하고 그리하여 언론중재가 언론과 국민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사유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은 언론중재제도의 미래의 모습을 조망하고 설계하는 데도 필요한 일이라고 필자는 이해한다. 이 글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 문제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언급은 다수있다. 그 중의 하나로 성낙인은 「...언론기본법은 언론탄압이라는 시대적 특수상황하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독소 조항인 문화공보부 장관의 등록취소 또는 발행정지등이 부각되었지만 법 자체가 폐지되어 마땅한 정도의 악법이라고만 치부할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특히 일부 독소조항은 헌법재판소를 통한 위헌법률심판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언론기본법이 그 이념적 전제로 삼고 있던 언론의 공적 책임은 사실상 언론이 자유를 충분히 만끽하는 상황하에서 강조하더라도 언론의 생리상, 병적인 규제라는 측면에서 저항의 소지가 있는데 언론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하에서 강조된 공적 책임이론이 법규범으로서 사회적 적응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평가한다.

필자는 1980년 사태를 회고하고 그리고 언론기본법의 본질적 성격을 되새겨 볼 때 위와같은 인식에 다소 이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하에서... 법규범으로서 사회적 적응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면서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한 마디로 언론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 아래서는 중재제도가 이해될 수도 또 바람직한 기능을 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오늘날 중재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호전되었고 이 제도가 안정되고 있는 이유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오늘의 현실이라는 지적이 된다.

필자는 위의 중재제도의 현 위상을 회복된 언론자유에서 보는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이러한 견해는 보다 설명될 여지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요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중재제도가 안정되고 있다는 그 이유는 회복된 언론자유와 함께 이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는 언론이라는 제도와 사회의 다른 여러 제도간에 갈등이 증폭되어왔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관계가 재조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필자는 이해한다. 이를 필자는 언론환경의 변화라고 압축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필자가 이 글에서 언론환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론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조건만이 아니라 언론매체 자체를 당연히 포함하는 말이다. 필자는 이런 의미의 언론환경을 이념적인 측면과 기술적 내지 물질적 측면으로 나누어 논의하려 한다. 이념적인 측면과 기술 내지 물질적인 측면을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의 편의상 이렇게 나눈다. 그리고 먼저 이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을 둘러싸고 있는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즉 자유주의가 도덕적 윤리적 삶을 성취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유주의하의 사회제도가 허구적이고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 문제는 언론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연하여 설명한다.

현대의 자유주의를 공격하는 이론은 오늘의 자유민주주의가 내세우고 있는 중립적인 정치 사회제도는 허구적이며 위선적이라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근원적으로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의 개인은 무엇보다 강력한 존재이다.

로크(Locke) 등의 개인이란 그러하여 사제와 같은 성직자와 정부를 내던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개인이었다. 이런 유의 자유주의가 창안한 사회제도는 차갑고 냉철하며 제약적이고 보편적인 개인을 전제로 한 것이다. 개인의 정서와 같은 특수성은 개인안에 사멸화 된다. 또 자유주의는 권력에 대한 불신과 함께 태어났다. 자유주의는 자의적인 권력으로 피해를 입어온 역사적 경험의 결과이었다. 그리하여 자유주의는 차가운 법적 절차를 추구하였다. 그래서 몽테스키외(C. Montesquieu)나 매디슨(J. Madison) 같은 자유주의자가 주장한 것은 「지성을 가진 악마」라는 정부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그것이 왕정이든 혁명적인 정부이든 모두가 그들의 혈연관계나 친소관계 그리고 애증의 관계가 편파성을 낳는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자유주의는 모든 개인들이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속에서 숨쉬는 구체적 개인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신념이나 애증을 초극한 보편적이며 「추상적인 개인」일 것을 요구한다. 오늘날 우리는 언론이 중립적이며 객관적인 존재이어야 함을 요구한다. 동시에 자유주의는 언론도 「추상적인 개인」과 동일한 사회의 제도로써 「추상적인 언론」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런 「추상적인 언론」은 인간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고정된 그리고 물화된 존재로 파악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 같으면서도-이것도 제대로하고 있지 않지만-실질적으로는 개인을 소외시키면서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우리의 현대사에서 언론중재제도가 어떻게 정착되고 있으며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려 하였다. 이에 대한 필자의 이해는 언론중재제도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잔존하여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필요는 언론환경의 변화에 그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언론환경이란 언론

자체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으로 거시적으로 볼 때 그동안 언론은 우리 사회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영향력이 막강해졌다는 사실을 필자는 주목하였다. 언론의 위상이 중심적인 사회제도로 상승되고 그 힘이 막강해졌다는 것은 그렇지 않았던 시대의 사회와 비교할 때 전체적인 사회체계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는 결국 언론제도와 다른 사회제도간의 갈등을 남고 있고 제도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갈등과 권력의 다툼속에 언론중재제도는 하나의 중재자로 필요했고 이에 따라 오늘날 기대 이상으로 이 제도는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언론중재제도의 존재 및 성격과 관련하여 이념적인 측면에서 언론환경의 변화를 말하였다. 이제부터는 기술과 물질적 측면에서 언론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겠다. 최근 미국의 경우 전자뉴스 서비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매체가 등장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뉴스를 취재 편집해서 이를 컴퓨터망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의 사설 전자토론 그룹을 기자로 이용하여 취재하고 이를 편집하여 이용자에게 전송한다는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신문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언론개념에 많은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전광판 뉴스나 전자신문 외에도 컴퓨터 통신이나 FAX 신문, 멀티미디어, 뉴스 신디케이트 등과 같은 수없이 많고 다양한 매체가 현재 개발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전통적인 언론매체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기존언론의 어느 특정한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법이나 규범체계가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존 언론제도는 물론, 다른 사회제도와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매체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나 기능은 「분화」와 「전문화」이다. 물론 「통합」이 매체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지금도 강조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통합」보다 「분화」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양이나 질에 있어서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매체가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 기술적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매체의 패권시대는 쇠퇴하고 있다. 그리고 다매체 다채널, 개방화, 국제화 그리고 산업화는 매체간의 치열한 경쟁을 낳는다. 그것은 각 매체의 생존이 걸린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다. 유목사회의 논리는 생존의 논리가 지배적이다. 과거의 특정 매체의 패권시대는 사라지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중요한 현상이 있다. 그것은 언론의 산업화 혹은 상업화 현상이다. 언론이 산업화 상업화 즉 돈을 버는 산업이 되고기업이 되었으며 언론의 비중이 경제적으로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이다. 과거에는 기사감이 되지 않던 일들도 오늘날에는 그것이 상품성만 있다면 모두가 취재 대상이 되어 기사로 나간다. 취재보도의 대상이 다양해지고 그 영역이 광범위해진다는 것은 곧 분쟁의 소지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들 사이의 분쟁이 많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정보도청구권 그리고 반론권 청구와 같은 문제를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중재처와 관련해서도 주목해야 할 문제라고 필자는 지적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언론매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언론매체와 언론환경의 변화는 정치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대단히 근원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다. 필자는 다시

말하는 것이지만 언론매체 자체를 포함한 언론환경의 변화가 중재제도에 사회적 요구를 증폭시켰고 이것이 오늘의 중재제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중재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 장치로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피해구제를 위해 반론권이나 정정보도청구권을 신속히 행사할 수 있는 장치로서 중재제도의 역할을 우리는 기대한다. 이것은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권리의 확보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권리의 확보만으로는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그렇게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현대사회의 성격이다.

그렇다면 중재제도 그리고 반론권과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법적인 권리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재제도의 사회적 의미는 강화될 수 있으며 언론과 사회간의 갈등문제를 조정하고 해소하는 새로운 사회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 서울대 철학과, 미 UCLA 대학원(신문학 석사), 미주리대(신문학 박사), 고대 언론대학원장
- 저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전파와 문화(공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모델(역)」, 「자유와 언론」 외
- 현재 고려대 신방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